

산학협동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(이하 “본 학회”라 한다)의 산, 학, 연구 및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산학연 협동신기술·우수제품전시회 및 발표회
- ② 산업계, 학계, 연구계의 공동연구 및 발표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추진
- ③ 현장 견학회 개최
- ④ 기타사항
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동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)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은 위원중 제5조의 분과별로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

제5조(분과)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9월 20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